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

---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26호(2014. 7. 30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2항,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 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23호, 2014.7.29.)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※ 붙임 : 고시 2014-126호 개정내역(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---

대리 유소영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415 ( 2014.07.30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ysy@kha.or.kr](mailto:ysy@kha.or.kr)